

「제100회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및 잔여일수 표시기 제작 및 설치·관리 사업」

업 무 협 약 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와 신한은행(이하 “신한은행”이라 한다), 서울특별시체육회(이하 “서울시체육회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「제100회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및 잔여일수 표시기 제작, 설치 및 관리 사업」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,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100회 전국체전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주체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조성하고 「제100회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및 잔여일수 표시기 제작, 설치 및 관리 사업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익추구·비정치·비영리의 원칙)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본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·종교적 활동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) ① 협약의 각 당사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.

1. “서울시”는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며 기관간 행정협조를 조정한다.
2. “신한은행”은 현물기부 등 재정지원을 통해 동 사업을 후원한다.
3. “서울시체육회”는 기부물품에 대하여 기부금품영수증을 발행하고 조형물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.

제4조(세부사항 협의) “서울시”와 “신한은행”, “서울시체육회”는 협력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며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개인정보 및 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밖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협약기관 상호간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본 협약은 각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까지로 한다.

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.

③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각 당사자 수에 맞게 작성하고 협약의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7조(기 타)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관련 시설은 사업 종료 시 모두 철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018년 10월 16일



행정1부시장
윤준병



신한은행 부행장
주철수



서울시체육회 수석부회장
주원홍